

# 방송 분야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New Type of Prohibition  
in the Broadcasting Sector

2019.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9-26

# 방송 분야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New Type of Prohibition  
in the Broadcasting Sector)

강준석/권용재

2019.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 분야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강준석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권용재 연구위원



# 목 차

요약문 .....	vii
<b>제 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b>	<b>1</b>
1. 연구 배경 .....	1
2.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	1
3. 보고서의 구성 .....	2
<b>제 2장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 분석 .....</b>	<b>4</b>
1. 개요 .....	4
2. 유형 1. 부당한 방식의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	4
3. 유형 2.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의 부당한 방해 .....	5
4. 유형 3.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수익 배분 .....	6
5. 유형 4. 수익배분방식 또는 배분 규모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거부 및 허위 자료 제공 .....	7
6. 유형 5. 정당한 사유 없는 IPTV 콘텐츠의 구매 및 제공 거절, 중단, 제한행위 ...	8
7. 유형 6.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	9
8. 유형 7. OTT 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	9
<b>제 3장 방송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규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b>	<b>12</b>
1. 개요 .....	12
2. 부당한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금지 .....	13
3.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 계약 유지의 부당한 방해 금지 .....	19
4.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 개선 .....	24
5.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 관련 금지행위 개선 .....	26

6. 정당한 사유 없는 IP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구매 및 콘텐츠 제공 거절·중단·제한 행위 금지 .....	31
7. 콘텐츠 제공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금지 .....	35
<b>제 4장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규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b>	<b>42</b>
1. 개요 .....	42
2. OTT 관련 금지행위 제도화의 목적 .....	42
3. OTT 금지행위 제도화 방식: 법제화 vs 자율규제 .....	44
4. 현행 세부 유형별 금지행위 적용 가능성 및 필요성 검토 .....	47
5. 신유형 금지행위 규제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	55
6. OTT 서비스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 방안(안) .....	60
<b>제 5장 주요 연구 결과 요약 .....</b>	<b>66</b>
1. 연구 배경 및 목적 .....	66
2.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 .....	67
3. 방송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	69
4.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	72
<b>참고문헌 .....</b>	<b>78</b>

# 표 목 차

〈표 3-1〉 방송법상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관련 금지 조항 .....	13
〈표 3-2〉 IPTV법상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관련 금지 조항 .....	14
〈표 3-3〉 부당한 자기 고객 유인 방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 방안 .....	16
〈표 3-4〉 부당한 자기 고객 유인 방지를 위한 IPTV법 개정 방안 .....	16
〈표 3-5〉 부당한 자기 고객 유인 방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	17
〈표 3-6〉 부당한 자기 고객 유인 방지를 위한 IPTV 시행령 개정 방안 .....	18
〈표 3-7〉 방송법상 경쟁 사업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관련 금지 조항 .....	20
〈표 3-8〉 IPTV법상 경쟁 사업자의 계약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관련 금지 조항 .....	20
〈표 3-9〉 부당한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 방해 차단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	22
〈표 3-10〉 부당한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 방해 차단을 위한 IPTV법 시행령 개정 방안 .....	23
〈표 3-11〉 비방송사업자 제공 콘텐츠 적정 수익 배분 관련 방송법 개정 방안 .....	26
〈표 3-12〉 방송법상 적정 수익 배분 관련 금지 행위 관련 조항 .....	27
〈표 3-13〉 IPTV상 적정 수익 배분 관련 금지 행위 관련 조항 .....	28
〈표 3-14〉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한 자료 제공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	29
〈표 3-15〉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한 자료 제공 관련 IPTV법 시행령 개정 방안 .....	30
〈표 3-16〉 방송법상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 관련 금지 행위 관련 조항 .....	31
〈표 3-17〉 플랫폼·콘텐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IPTV법 개정 방안 .....	34
〈표 3-18〉 플랫폼·콘텐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IPTV법 시행령 개정 방안 .....	34
〈표 3-19〉 방송법상 콘텐츠사업자의 금지 행위 관련 조항 .....	36

〈표 3-20〉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	39
〈표 3-21〉 플랫폼·콘텐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IPTV법 시행령 개정 방안 .....	40
〈표 4-1〉 OTT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 적용 세부 방안 검토 .....	60
〈표 4-2〉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	62

# 요 약 문

## 1. 제 목

- 방송 분야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 연구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
  -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채널 사업자간 시청률 경쟁 및 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반면, 전체 방송시장의 성장 속도는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방송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음
- OTT 서비스 관련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우려 존재
  -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하지만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들과 연관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본 보고서를 통해서 다음의 연구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방송시장 및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목표 1) 방송시장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세부 유형을 분석

- (연구목표 2) OT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과 연관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세부 유형을 분석
- (연구목표 3) 새로운 유형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응한 금지행위 개선 방안 마련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제1장) 본 보고서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
- (제2장)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 양태 변화와 OTT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기존의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세부 유형을 식별함
- (제3장) 제2장에서 식별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의 규제 필요성과 세부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제4장) OTT 서비스와 관련된 금지행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제5장) 앞장에서 제시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함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

-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 양태 변화와 OTT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기존의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음
- (유형 1) 부당한 방식의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 (유형 2)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

- (유형 3) 외주제작사 등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수익 배분
- (유형 4) 수익배분방식 또는 배분 규모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거부 및 허위 자료 제공
- (유형 5) IPTV 방송 제공사업자와 IPTV 방송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의 구매 및 제공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 (유형 6) PP 등 콘텐츠 제공 방송사업자측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등)
- (유형 7) OTT 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sup>1)</sup>

## □ 방송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 가. 부당한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금지

- 방송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공정 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함
- 방송사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의 서비스 전환을 유인하는 행위를 방송법 및 IPTV법상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이나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서비스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식으로 자사 고객 변경(예, 고가 서비스로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

### 나.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 계약 유지의 부당한 방해 금지

-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더욱 격화될수록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시청자 사이의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를 방해할 유인은 더욱 커질 가능성 존재
- 하지만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관련 조항에 따르면 현재 체결되어 있는 방송사업자

---

1) (1) OTT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2) 방송사업자의 OTT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3) OTT 사업자 간의 불공정 행위, (4) OTT 사업자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와 시청자 사이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유지를 부당한 방식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이 용이하지 않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에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를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추가

#### 다.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 개선

- 방송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1) 외주 제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2) 제작비 절감을 위한 외주제작 단가 인하 압력 역시 더욱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방송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1) 외주 제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2) 제작비 절감을 위한 외주제작 단가 인하 압력 역시 더욱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 및 IPTV법의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유료방송사업자나 PP 등 자신의 방송사업 수익을 다른 사업자에게 콘텐츠 사용 대가 등의 명목으로 배분하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외주제작사 등의 비방송사업자에게도 적정한 수익의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설정

#### 라.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 관련 금지행위 개선

- 적정 수익 배분 규모 결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허위로 제공되거나, 그 제공이 거부될 경우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크게 저하될 수도 있음
- 적정 수익 배분 규모 결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허위로 제공되거나, 그 제공이 거부될 경우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크게 저하될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익배분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

- 다. 정당한 사유 없는 IP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구매 및 콘텐츠 제공 거절·중단·제한 행위 금지
- 방송법과 달리 IPTV법에는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행위 세부 유형에 포섭하고 있지 않고 있어, 비대칭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 존재
  - IPTV 가입자 규모가 SO 가입자 규모를 초과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의 중심이 IPTV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IPTV 방송 제공사업자와 IPTV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포섭해야할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IPTV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IPTV 방송 제공사업자와 IPTV 콘텐츠사업자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구매 및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을 설정
- 바. 콘텐츠 제공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금지
- 현행 방송법도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에서 해당 행위의 세부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제시하는 세부 금지행위 유형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여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조건으로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등 콘텐츠사업자가 과도한 협상력을 행사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응하는데 한계 존재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 가.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 거부·중단·제한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및 프로그

램 제공의 거부·중단·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방송사업자 또는 OTT 사업자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OTT 사업자 배제를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또는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를 통해서 경쟁 OTT 사업자에게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가능성 존재
- 하지만, 독점적 콘텐츠 제공 전략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OTT 사업자에 대한 관련 행위 적용이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 제기 가능
- 해당 규제 도입 시, 국내 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역외 OTT 사업자에게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도 있어, 국내 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가능
- 관련 규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의 거부·중단·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나.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 설비 접근 거부·중단·제한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 설비 접근 거부·중단·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개방형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OT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 OTT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나 다른 OTT 사업자의 전송설비 등을 사용하거나, (2) 유료방송사업자의 OTT 사업자의 전송설비 등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OTT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설비 접근 등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관련 행위의 규제 필요성 역시 낮아 보임

#### 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의 변경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의 변

경 행위를 관련 OTT 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OTT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PP 또는 OTT 전용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제공 받는 채널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채널편성을 임의로 변경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관련 행위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의 변경 행위를 관련 OTT 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향의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라. 적정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서 기존 방송사업자(예,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PP 등의 콘텐츠사업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향후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PP 및 OTT 전용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에게 적정 수익의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 관련 규제 도입 시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향의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마.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방송사업자가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청 및 이용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을 방해하거나, OTT 사업자가 방송사업자 또는 다른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청 및 이용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을 방해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려움

- 관련 행위 발생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바. 부당한 시청자 차별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금 또는 여타 이용 조건에 대한 부당한 시청자 차별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OTT 사업자가 장기시청자, 다량시청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시청자 또는 다른 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시청자 등 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 조건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하게 시청자 차별 가능성 배제 불가
-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시청자 차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사. 이용약관 위반 행위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OTT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OTT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가입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경우 OTT 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OTT 서비스 이용자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 존재
- OTT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우려를 고려할 때, 해당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의 관련 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아.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OTT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위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
- 관련 행위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OTT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정책적 활용 내용

-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후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변화된 방송시장 및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련 정책 수립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6. 기대효과

- 변화된 방송시장에서 이용자 이익 및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금지행위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의 적용을 통해서 방송시장 상생 발전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방송서비스 이용자 후생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SUMMARY

## 1. Title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New Type of Prohibition in the Broadcasting Sector

##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Competition for attracting subscribers among pay-tv platforms is intensifying, and competition for viewers and advertising market among PPs(program providers) is intensifying. On the other hand, the growth rate of the entire broadcasting market is slowing down, and the trend is likely to be maintained in the future. Due to changes in the broadcasting market environment, the possibility of new types of unfair behaviors and user interests detriment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prohibitions is also increasing.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TT service is classified as a value added common carrier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refore is excluded from the prohibit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IPTV Act. However, with the growth of OTT services such as Netflix,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unfair behaviors related to them and the detriment of user interests. In particular, (1) issues related to revenue sharing between OTT platform and content providers, (2) issues related to channel and program provision between OTT platform and content providers, and (3) undermines user interests for OTT service users. It is very likely that related issues will emerge.

In response to such changes in the broadcasting market environment, the necessity of

reviewing (1) the establishment of a new type of prohibitions regulations and (2) the preparation of policy measures to include the unfair behaviors of OTT operators and the detriment of user interests are subject to the current prohibitions in the laws, is rising

###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analyzes and identifies the possibility of new types of unfair trade and user interests detriment that do not belong to the existing types of prohibit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and IPTV act due to changes in competition between operators in the broadcasting market and activation of the OTT market. Chapter 3 suggests the need for regulation of new types of unfair and user interests detriment behaviors identified in Chapter 2 and measures for improving detailed regulation. Chapter 4 reviews the need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prohibited behaviors related to OTT services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m.

### **4. Research Results**

This study identifies new types of unfair behaviors and user interest deterrence in the broadcast market and analyzes the likelihood and detailed types of such behavior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type of prohibition, a detailed analysis of the likelihood of occurrence of new forms of fair competition and user interests detriment that are not subsumed under the existing Broadcasting act and IPTV act in the changed broadcasting market environment should be conducted. This study identifies new forms of impairment of fair competition and user interests, reviews the possibility of such activities. They can be used as a basis for judging the necessity of improving related regulations for prohibited activities.

Next, this study identifies unfair behaviors and user interest detriment associated with

OTT service providers and related content providers, and analyzes the likelihood and detailed types of such behavior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prohibit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on fair competition issues related to OTT services and acts that hinder user interests, an analysis of the specific aspects and the likelihood of such activities is required.

Last,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prohibitions in response to new types of fair competition and user interest degradation. It prepares detailed measures to improve the prohibition regulations to block the new forms of fair competition and user interest deterrence and to resolve the related concerns. To this end, it categorizes new types of fair competition and user interests deterrence, reviews the need for inclusion in the current broadcasting law and IPTV law system of regulation, and suggests ways to institutionalize types of fair competition and user interests deterrence.

##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post-regulation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broadcasting and media market environment.

## **6. Expectations**

In order to prevent user interests detriment and unfair behaviors in the changed broadcasting market,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welfare of broadcasting service users while creating a fair environment for win-win growth in the broadcasting market by applying the improvements of various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hibited behaviors presented in this study.



# CONTENTS

Chapter 1. Background and Purpose

Chapter 2. Analysis of New Types of Fair Competition and User Infringement Behaviors

Chapter 3. Necessity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 on Prohibited Behaviors of Broadcasting Operators

Chapter 4. Necessity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 on Prohibited Behaviors related to OTT services

Chapter 5. Summary of key findings



#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
  -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채널 사업자간 시청률 경쟁 및 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반면, 전체 방송시장의 성장 속도는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방송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음
- OTT 서비스 관련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우려
  -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하지만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들과 연관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향후 (1) OTT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사업자 사이의 수익 배분 관련 이슈, (2) OTT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사업자 사이의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 관련 이슈, (3) OTT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관련 이슈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함
- 이와 같은 방송시장 관련 환경 변화에 따라서 (1)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의 신설과 (2) 금지행위 규제 대상에 OTT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까지 포섭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 (연구목표 1) 방송시장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세부 유형을 분석

-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변화된 방송시장 환경에서 기존 방송법 및 IPTV법에 포섭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과 세부 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금지행위 제도 개선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연구목표 2) OT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과 연관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세부 유형을 분석
  - OTT 서비스 관련 공정경쟁 이슈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 포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와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필요
- (연구목표 3) 새로운 유형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응한 금지행위 개선 방안 마련
  - 연구목표 1과 2의 달성을 통해서 식별된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금지행위 제도 개선 세부 방안 마련
  - 이를 위해서 (1)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행위별로 유형화하고, (2) 해당 유형별 행위의 현행 방송법 및 IPTV법 금지행위 규제 체계로의 포섭 필요성을 검토하고, (3) 규제 필요성이 있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에 대한 제도화 방안 제시

### 3. 보고서의 구성

- (제2장)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 양태 변화와 OTT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기존의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세부 유형을 식별함

- (제3장) 제2장에서 식별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의 규제 필요성과 세부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제4장) OTT 서비스와 관련된 금지행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제5장) 앞장에서 제시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함

## 제2장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 분석

### 1. 개요

-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 양태 변화와 OTT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기존의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음
  - (유형 1) 부당한 방식의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 (유형 2)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
  - (유형 3) 외주제작사 등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수익 배분
  - (유형 4) 수익배분방식 또는 배분 규모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거부 및 허위 자료 제공
  - (유형 5) IPTV 방송 제공사업자와 IPTV 방송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의 구매 및 제공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 (유형 6) PP 등 콘텐츠 제공 방송사업자측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등)
  - (유형 7) OTT 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sup>2)</sup>

### 2. 유형 1. 부당한 방식의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 방송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고객을 유인

---

2) (1) OTT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2) 방송사업자의 OTT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3) OTT 사업자 간의 불공정 행위, (4) OTT 사업자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할 사업자측의 유인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1) 가입자 시장의 포화, (2) SO 사업자의 역성장 등으로 이와 같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특히,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상품을 판매하거나, 타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 (1) 기존 상품의 서비스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 (2) 그 밖의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시청자의 방송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일부 채널 또는 전체 채널의 전송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컨텍을 유도한 후 서비스 전환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한 자신의 방송서비스 가입자의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 발생 가능
  - ※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해당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서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거래 방해로 인해 경쟁사업자 고객 유인을 통한 거래 방해)을 정의하고 있음

### 3. 유형 2.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의 부당한 방해

- 방송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와의 서비스 계약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 존재
-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성장세가 둔화되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근접함에 따라서 타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자신의 가입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이와 같은 타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자기 가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부당

한 방법으로 타방송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의 계약 유지를 방해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 예를 들어 계약자를 사칭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고 해당 계약자가 자기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 4. 유형 3.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수익 배분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관련 조항에 따르면 적정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피규제 대상 방송사업자의 상대방 역시 다른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외주제작사나 VOD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화배급사 등은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지행위의 보호 대상이 아님

○ 이는 과거 해당 조항 제정 시, 그 취지가 유료방송플랫폼과 유료방송채널 사이의 수익 배분과 관련된 이슈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수익배분과 관련된 금지행위 제정 당시에는 VOD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된 단계가 아니었으며,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와의 이슈도 수익 배분 문제 보다는 저작권 배분 또는 적정 제작비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갈등의 중심이었음

○ 하지만,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방송사업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로만 한정되지 않음

－ 이 같은 상황에서 비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및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한 수익 배분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현행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제도를 통해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음

－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외주제작사업자는 분쟁 조정의 대상으로 포섭되어 있고,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등 일부 방송법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방송법상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IPTV법에는 외주제작사 개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외주제작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

의 적정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의 보호 대상이며, (2) 아직까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sup>3)</sup> 현 단계에서는 관련 불공정 거래 이슈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sup>3)</sup>

- 또한 방송법상에서는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방송사업자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금지행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IPTV법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IPTV법 제17조 제1항 제6호)하고 있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기존에도 적정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적용이 가능해 보임

#### 5. 유형 4. 수익배분방식 또는 배분 규모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거부 및 허위 자료 제공

○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수익배분 방식을 결정하거나 배분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적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 존재

○ 예를 들어,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revenue sharing 방식으로 VOD 매출액을 배분할 경우, 배분되는 매출액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지만, 해당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존재

※ 유료방송플랫폼이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VOD 영화 매출액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처럼 제3자가 실시간으로 VOD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3) 대부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방송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 금지행위 보호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이슈도 대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 유료채널(예, 캐치온 등)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 사이에 정액으로 콘텐츠 제공 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배분 규모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사전에 정액으로 콘텐츠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제공자와 수요자가 적정 콘텐츠 대가 규모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려움
  - ※ 예를 들어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프로그램의 이용량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제공 콘텐츠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
  - ※ 무료 VOD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정액으로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의 이용자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유사 콘텐츠의 대가 설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 6. 유형 5. 정당한 사유 없는 IPTV 콘텐츠의 구매 및 제공 거절·중단·제한행위

- IPTV 방송 제공사업자가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콘텐츠의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sup>4)</sup>가 IPTV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할 가능성 존재
- 예를 들어, IPTV 방송 제공사업자나 IPTV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실시간 채널의 제공과 관련된 협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실시간 채널을 구매하거나 제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4) IPTV법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제3항에 따라 IPTV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 7. 유형 6.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 관련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일부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유료방송플랫폼측에 대한 상당한 협상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불공정 행위를 할 우려 역시 존재
  - 유료방송플랫폼 사이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더욱 활발해 짐에 따라서, 핵심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서 지상파 채널 및 인기 유료방송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콘텐츠사업자(지상파 방송사 및 PP)의 협상력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 일부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이용해서
  - (1)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등 콘텐츠 도매 수요자에게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거나
  - (2) 인기 콘텐츠의 구매를 위해서 비인기 콘텐츠의 구매를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 ※ 예를 들어, 인기 채널을 제공 받기 위해서 비인기 채널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3) 자신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다른 콘텐츠사업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행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OTT 서비스 활성화와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 사이의 경쟁 증가 등의 관련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콘텐츠 도매 거래 시장에서의 수요자(유료방송플랫폼, 방송사 등)와 공급자(PP, 외주제작사 등) 사이의 협상력의 열위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 존재

## 8. 유형 7. OTT 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규율 대상 사업자는 기존 방송사업자로 한정됨에 따라서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OTT 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OTT 사업자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어, 해당 법의 금지행위 관련 규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 해당 금지행위는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사항으로, OTT 사업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 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OTT 사업자를 현행 방송법 및 IPTV법상 금지행위의 규율 대상으로 포섭한다고 해도, 해당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 OTT 플랫폼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SO나 IPTV 등의 유료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관련된 문제점 역시 그대로 발생할 수 있음
  - ※ OTT 사업자가 다른 경쟁 OTT 사업자 또는 경쟁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행할 수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도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채널 제공 거부) OTT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의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할 가능성 존재
    - (프로그램 제공 거부) OTT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자신과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동영상 서비스 제공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사업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할 가능성 존재
    -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OTT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할 가능성 존재
    - (이용 및 계약 방해) OTT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가능성 존재
    - (이용자 차별) OTT 플랫폼 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존재
    - (이용약관 위반) OTT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할 가능성 존재
    - (이용자 정보 유용) OTT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할 가능성 존재
- 한편으로는 기존 방송사업자가 OTT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행할 가능성도 완전

하게 배제하기 어려움

- (프로그램 제공 거부) 기존 방송사업자가 자신과 경쟁하는 OTT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유인 존재

※ 예를 들어, 지상파 채널이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OTT 서비스인 WAVVE와 경쟁하는 티빙이나 여타 OTT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콘텐츠 공급을 거부할 가능성 존재

※ 또는 유료방송플랫폼이 PP와의 계약 시 OTT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공급 거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용 및 계약 방해) 기존 방송사업자가 OTT 서비스의 이용이나 계약을 인위적으로 방해할 가능성 배제 불가

※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자기와 경쟁하는 OTT 서비스의 전송 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출 가능성 존재

# 제3장 방송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규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 1. 개요

- 위에서 식별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의 규제 필요성과 세부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
  - (개선 방안 1) 방송사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의 서비스 전환을 유인하는 행위를 방송법 및 IPTV법상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
  - (개선 방안 2) 방송사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송법 및 IPTV법상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
  - (개선 방안 3)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 및 IPTV법의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
  - (개선 방안 4) 방송사업자가 적정 수익 배분 규모를 사전 또는 사후에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포섭
  - (개선 방안 5) IPTV 방송 제공사업자와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사이의 실시간 방송채널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
  - (개선 방안 6) PP 등의 콘텐츠 제공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

## 2. 부당한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금지

### 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 방송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공정 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함
- 현행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에서도 ‘과다한 이익 제공’이나 ‘허위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 고객의 부당 유인을 금지하고 있음

〈표 3-1〉 방송법상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관련 금지 조항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p>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Ⅲ. 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2.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표 3-2〉 IPTV법상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관련 금지 조항

IPTV법	IPTV법 시행령
<p>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p> <p>6.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p> <p>나.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자 전환 지연, 부당 유인, 과도한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다.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또는 자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라. 부당하게 이용자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 하지만, 현행 방송법 및 IPTV 금지행위 규정은 방송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자신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관련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포섭하고 있지 못함
  - ※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1) 현재 가입 중인 서비스의 정당한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2) 이용 서비스 전환 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 현행 공정 거래법에서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방송시장에서는 ‘경쟁자의 고객’뿐만 아니라 ‘자기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 유인 가능성이 상당히 보임
- 이와 같은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구매 방식의 차이) 일회적인 구매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와 달리,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가입 모델이 적용됨에 따라서 판매 이후에도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인터랙션이 발생
  - (서비스 특성의 차이) 동일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어, 수익성이 낮은 상품(저가 티어)을 수익성이 높은 상품(고가 티어)으로 전환시킬 유인을 갖고 있음

#### 나. 제도 개선 세부 방안

- (기본 방향) 방송사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의 서비스 전환을 유인하는 행위를 방송법 및 IPTV법상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
  -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이나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서비스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식으로 자사 고객 변경(예, 고가 서비스로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
  -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 행위의 양태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시행령을 통해서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는 방안 검토 가능
  - ※ 예를 들어서 (1) 자사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2)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부당한 유인행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여타의 부당한 행위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규제 당국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 검토 가능

- (방송법 및 IPTV법 개정 방안)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청 및 서비스 계약 체결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자신의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

〈표 3-3〉 부당한 자기 고객 유인 방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거나, <b>자신의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b></p>

〈표 3-4〉 부당한 자기 고객 유인 방지를 위한 IPTV법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거나, <b>자신의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b></p>

-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 개정 방안) 자신의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저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설정

〈표 3-5〉 부당한 자기 고객 유인 방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별표 2의3]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Ⅲ. 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2.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신설〉</p>	<p>[별표 2의3]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Ⅲ. 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2.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변경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 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b>라. 자신의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저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b></p>

〈표 3-6〉 부당한 자기 고객 유인 방지를 위한 IPTV 시행령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p> <p>6.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p> <p>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p> <p>나.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자 전환 지연, 부당 유인, 과도한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다.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또는 자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라. 부당하게 이용자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신설〉</p>	<p>[별표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p> <p>6.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변경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p> <p>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p> <p>나.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자 전환 지연, 부당 유인, 과도한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다.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또는 자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라. 부당하게 이용자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b>마. 자신의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저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b></p>

- (위법성 판단 기준 예시)
  - (서비스 이용 방해)
    - (서비스 제공 중단) 기존 가입자가 이용 중인 서비스의 제공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서비스 전환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실수 등의 비의도적인 이용약관 위반 행위 보다 그 행위의 의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기존의 이용약관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와는 별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가능
    - (서비스 품질 저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기존 가입자의 서비스 전환을 유인하는 행위
      - ※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증가에 따라서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발생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 (과다한 이익 제공)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자기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할인 및 보조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가입 계약 시 또는 가입 해지 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만을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지정>하고 있어, 자기 고객의 가입 전환 시에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3.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 계약 유지의 부당한 방해 금지

#### 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더욱 격화될수록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시청자 사이의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를 방해할 유인은 더욱 커질 가능성 존재
- 하지만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관련 조항에 따르면 현재 체결되어 있는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사이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유지를 부당한 방식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이 용이하지 않음

※ 이는 현행법령에서는 (1) 다른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청을 방해하거나 (2)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가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표 3-7〉 방송법상 경쟁 사업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관련 금지 조항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p>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Ⅲ. 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2.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표 3-8〉 IPTV법상 경쟁 사업자의 계약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관련 금지 조항

IPTV법	IPTV법 시행령
<p>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p>

IPTV법	IPTV법 시행령
<p>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6.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p> <p>나.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자 전환 지연, 부당 유인, 과도한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다.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또는 자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라. 부당하게 이용자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나. 제도 개선 세부 방안

- (기본 방향) 부당한 시청 방해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제85조의3 제1항 제3호와 IPTV법 제17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시행령에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포섭
-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 개정 방안) 방송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청

자와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계약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규정

〈표 3-9〉 부당한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 방해 차단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별표 2의3]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2.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신설〉</p>	<p>[별표 2의3]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2.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b>라.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계약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b></p>

〈표 3-10〉 부당한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 방해 차단을 위한 IPTV법 시행령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다.</p> <p>6.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나.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자 전환 지연, 부당 유인, 과도한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다.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또는 자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라. 부당하게 이용자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신설〉</p>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다.</p> <p>6.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나.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자 전환 지연, 부당 유인, 과도한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다.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또는 자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라. 부당하게 이용자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b>마.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방송서비스 이용자와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계약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b></p>

#### 4.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 개선

##### 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외주제작사 등 비방송사업자와 방송사 및 유료방송 플랫폼 등 방송사업자 사이에 콘텐츠 수급과 관련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 증가
- 방송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1) 외주 제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2) 제작비 절감을 위한 외주제작 단가 인하 압력 역시 더욱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방송시장에서의 콘텐츠 이용 행태가 실시간 채널 중심에서 다양한 비실시간 콘텐츠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 비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수급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

##### 나. 제도 개선 세부 방안

- (기본 방향)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 및 IPTV법의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
  - 유료방송사업자나 PP 등 자신의 방송사업 수익을 다른 사업자에게 콘텐츠 사용대가 등의 명목으로 배분하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외주제작사 등의 비방송사업자에게도 적정한 수익의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설정
  - ※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지칭(방송법 제2조 제27호)
- (보호 대상 확대 범위)
  - (방안 1)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의 보호 대상 비방송사업자를 ‘외주제작사’로 한정
    - (장점) 현행 방송법에 ‘외주제작사’가 이미 보호 대상으로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방안 2 대비 이해당사자의 반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단점)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 여타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익 배분 이

슈는 여전히 해소 불가

- (방안 2)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의 보호 대상 비방송사업자를 외주제작사뿐만 아니라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까지 확대

※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방송서비스에 수반하여 콘텐츠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정의

- (장점) 방송서비스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유료방송사업자와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와의 수익 배분 관련 이슈 발생 가능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 (단점) 보호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다는 일부 이해당사자 반발 가능성 존재

- (소결) 최소한 외주제작사를 적정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금지행위 보호 대상에 포섭하고, 가능하면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를 관련 금지행위 보호 대상에 포섭

○ (방송법 개정안)

- (1안)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

- (2안)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방송서비스에 수반하여 콘텐츠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sup>5)</sup>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

※ IPTV법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IPTV법 제17조 제1항 제6호)하고 있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기존에도 적정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적용이 가능해 보임

---

5) 방송서비스에 수반하여 콘텐츠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를 지칭함

〈표 3-11〉 비방송사업자 제공 콘텐츠 적정 수익 배분 관련 방송법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p>	<p>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방안 1) <b>2. 다른 방송사업자등과 외주제작사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b></p> <p>(방안 2) <b>2. 다른 방송사업자등, 외주제작사, 방송서비스에 수반하여 콘텐츠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b></p>

- (위법성 판단 기준) 해당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고, 다만 보호 대상 사업자의 범위만 외주제작사 등의 비방송사업자로 확대

## 5.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 관련 금지행위 개선

### 가. 관련

- 적절한 수익 배분 계약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적정 수익 배분 규모의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는지의 여부임
- 적정 수익 배분 규모 결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허위로 제공되거나, 그 제공이 거부될 경우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크게 저하될 수도 있음

- 과거 실시간 채널 시청 중심의 방송서비스 이용 행태가 비실시간 콘텐츠 이용 확산으로 인해서 변화함에 따라,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예를 들어, 실시간 유료방송채널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제공하는 채널 시청률 자료가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가진 자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임
- ※ 하지만, VOD 등 비실시간 콘텐츠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서, 해당 콘텐츠의 이용 정보는 유료방송플랫폼 등 콘텐츠 도매 수요자만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이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적절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 존재
- 적정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기존 금지행위 규정에서는 관련 정보의 제공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아, 현재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적정 수익 배분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 가능

〈표 3-12〉 방송법상 적정 수익 배분 관련 금지 행위 관련 조항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p>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5. 3. 13., 2015. 12. 22.&gt;</p> <p>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p>	<p>[별표 2의3] &lt;개정 2016. 7. 26.&gt;</p> <p>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II.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절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li> <li>2.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li> <li>3.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절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li> </ol>

〈표 3-13〉 IPTV상 적정 수익 배분 관련 금지 행위 관련 조항

IPTV법	IPTV법 시행령
<p>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p>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p> <p>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p> <p>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p> <p>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p> <p>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수익 배분이나 정상적인 관행보다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현저한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p>

나. 제도 개선 세부 방안

- (기본 방향) 방송사업자가 적정 수익 배분 규모를 사전 또는 사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포섭
- 적정한 수익 배분을 위한 계약 조건의 결정 또는 수익 산정 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를 사전에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해당 자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당 자료의 범위는 규제 당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적절

※ 수익배분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 방식 및 거래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해당 계약 및 거래에서 적절한 수익 배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를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임

-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 개정안) 수익배분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

〈표 3-14〉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한 자료 제공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별표 2의3]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II.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li> <li>2.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li> <li>3.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li> </ol> <p>〈신설〉</p>	<p>[별표 2의3]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II.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li> <li>2.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li> <li>3.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li> <li>4. <b>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조건의 결정 또는 수익 산정 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b></li> </ol>

주: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적정 수익 배분의 대상을 외주제작사 등 비방송사업자로 확장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이들 비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방송사업자가 적정 수익 배분과 관련된 자료 제공 의무를 지켜야 함

〈표 3-15〉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한 자료 제공 관련 IPTV법 시행령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p> <p>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손해 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수익 배분이나 정상적인 관행보다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현저한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p>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p> <p>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수익 배분이나 정상적인 관행보다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현저한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b><u>라.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조건의 결정 또는 수익 산정 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u></b></p>

○ (위법성 판단 기준)

- (자료 제공 거부) 적정한 수익 배분 계약 및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예, 콘텐츠 이용량 및 관련 매출액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수익을 배분하는 측(예, 유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수익을 배분받는 측(예,

- PP)에서도 수익 배분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당 금지행위의 위반임
- (허위 자료의 제공) 적정한 수익 배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은 하였으나 그 내용을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도 이는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임

## 6. 정당한 사유 없는 IP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구매 및 콘텐츠 제공 거절·중단·제한 행위 금지

### 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이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2)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 또는 중단하거나, (2)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표 3-16〉 방송법상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 관련 금지 행위 관련 조항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p>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5. 3. 13., 2015. 12. 22.&gt;</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p>	<p>[별표 2의3] &lt;개정 2016. 7. 26.&gt;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1.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p> <p>가.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p> <p>나. 채널을 제공하면서 채널의 제공과 관</p>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p>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p> <p>2.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p> <p>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p> <p>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p>

-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된 방송법상 금지행위의 입법 취지는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된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방송서비스 이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적정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반면, 방송법과 달리 IPTV법에는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행위 세부 유형에 포섭하고 있지 않고 있어, 비대칭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 존재
- IPTV 가입자 규모가 SO 가입자 규모를 초과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의 중심이 IPTV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IPTV 방송 제공사업자와 IPTV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포섭해야할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가 IPTV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임

나. 제도 개선 세부 방안

- (기본 방향)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여, 방송법상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된 금지행위 규제를 IPTV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 IPTV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IPTV 방송 제공사업자와 IPTV 콘텐츠사업자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구매 및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을 설정
  - ※ 현행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여부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IPTV법에는 관련 조항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IPTV법 개정을 통해서 (1) 정당한 사유 없이 IPTV 방송 제공사업자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 계약을 거부 및 중단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는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콘텐츠 제공 거부 및 중단 행위도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포섭하자는 것
- (IPTV법 개정안) IPTV법 개정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와 콘텐츠의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설정
  - IPTV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1)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를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2)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IPTV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설정
  - IPTV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1) 콘텐츠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2) 콘텐츠의 구매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3)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콘텐츠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IPTV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설정

〈표 3-17〉 플랫폼·콘텐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IPTV법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설〉</p> <p>〈신설〉</p>	<p>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8. <u>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를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u></b></p> <p><b>② <u>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 제18조 제1항에 따라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u>정당한 사유 없이</u> 이의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u></b></p>

〈표 3-18〉 플랫폼·콘텐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IPTV법 시행령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다.</p> <p>〈신설〉</p>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다.</p> <p>8.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구매 거부 및 중단 행위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금지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b>가. <u>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u>정당한 사유 없이</u> 거부하거나 실시간 프로그램의 구매를 <u>정당한 사유 없이</u>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u></b></p>

현행	개정
<p>&lt;신설&gt;</p>	<p><u>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u></p> <p>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2항 관련)</p> <p>법 제17조 제2항의 금지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u>가. 콘텐츠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콘텐츠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u></p> <p><u>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콘텐츠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u></p>

## 7. 콘텐츠 제공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금지

### 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기존의 금지행위는 콘텐츠의 수요자(예, 유료방송플랫폼)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불공정한 행위(예, 적정 콘텐츠 대가 미지급, 부당한 채널 변경 등)를 할 가능성 차단이 주목적이었음
- 현행 방송법도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에서 해당 행위의 세부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제시하는 세부 금지행위 유형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여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이에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조건으로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등 콘텐츠사업자가 과도한 협상력을 행사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응하는데 한계 존재

〈표 3-19〉 방송법상 콘텐츠사업자의 금지 행위 관련 조항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p>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5. 3. 13., 2015. 12. 22.&gt;</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p>	<p>[별표 2의3] &lt;개정 2016. 7. 26.&gt;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2.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p> <p>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p> <p>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p>

- 하지만, 유료방송플랫폼간 경쟁 활성화에 따른 킬러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 증가와 유료방송채널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에 따라서 지상파 채널 및 인기 유료방송채널의 협상력이 상당한 수준일 가능성 존재
- 또한 OTT 서비스 확대에 인해서 핵심 콘텐츠를 보유한 콘텐츠사업자의 협상력 역시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와 같은 관련 시장 환경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역시 금지 행위 유형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방안이 대해서 검토 필요

나. 제도 개선 세부 방안

- (기본 방향)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

-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금지행위에 (1) 콘텐츠 제공의 대가로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 (2)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다른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3)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다른 콘텐츠 제공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을 추가

○ (적용 대상 콘텐츠의 범위)

- (이슈) 해당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 콘텐츠의 범위를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할 것인지, 'VOD 등 비방송 콘텐츠까지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현행 방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만을 금지행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VOD 등 방송법상 콘텐츠 활성화에 따라서, 해당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을 비방송 콘텐츠 공급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방안 1. 현행 유지)

- (개념) 현행과 같이 금지행위 적용 대상 콘텐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하는 방안
- (장점)  
방안 2 대비 이해당사자 반발 가능성이 낮음
- (단점)  
VOD 등 비방송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관련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 유지 시,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가 VOD 등 방송법상의 방송내용물이 아닌 콘텐츠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한 차단이 용이하지 않음

- (방안 2. 적용 대상 확대)

- (개념) 관련 금지행위 적용 대상 콘텐츠를 현행 '방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VOD 등 비방송 콘텐츠까지 확대하는 방안  
※ <모든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비방송 콘텐츠>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콘텐츠>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

• (장점)

VOD 등 비방송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콘텐츠 제공사업자측의 불공정 행위 차단 가능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시청 패턴 변화 등에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비방송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관련 불공정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 (단점)

현행 방송법 체계상 금지행위의 규율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방송사업자인 콘텐츠 제공사업자까지 해당 금지행위의 규율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 제기 가능

※ 해당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 사업자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및 여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는 해소 가능  
현행 방송법상에 방송 프로그램 이외의 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가능

※ 해당 방안 채택 시 방송법 정의 조항에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콘텐츠에 대한 정의 추가 필요 (예시)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콘텐츠: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에 수반되는 내용물

- (소결) 관련 금지행위 적용 대상을 현행의 '방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여타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1) 부당한 수익배분을 요구하거나, (2) 다른 콘텐츠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3) 다른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

〈표 3-20〉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별표 2의3]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2.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p> <p>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p> <p>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p> <p>(신설)</p>	<p>[별표 2의3]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p> <p>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1안)</p> <p>2.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p> <p>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p> <p>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p> <p><b><u>다. 방송프로그램 제공의 조건으로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u></b></p> <p><b><u>라. 방송프로그램 제공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다른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u></b></p> <p><b><u>마. 방송프로그램 제공의 조건으로 다른 방송프로그램 제공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u></b></p> <p>(2안)</p> <p>2. 방송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콘텐츠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p> <p>가. 방송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콘텐츠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콘텐츠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p>

현행	개정
	<p>나. 방송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p> <p><b>다. 방송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b></p> <p><b>라. 방송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다른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b></p> <p><b>마. 방송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다른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공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b></p>

주: 2안 채택 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의 <프로그램의 제공>도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표 3-21〉 플랫폼·콘텐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IPTV법 시행령 개정 방안

현행	개정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다.</p> <p>&lt;신설&gt;</p>	<p>[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2항 관련)</p> <p>법 제17조 제2항의 금지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가. 콘텐츠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콘텐츠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p> <p>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콘텐츠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p> <p><b>다.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b></p> <p><b>라.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다른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b></p>

현행	개정
	<b>다.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다른 콘텐츠 제공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b>

주: 제15조 제2항은 IPTV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신설 금지행위 규정을 지칭함

○ (위법성 판단 기준)

- (부당한 수익 배분)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증감 등 관련 시장 상황 변동에 비하여 과도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 ※ 시청률 및 제작비용 등이 유사한 여타 방송프로그램 대비 현저하게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부당한 수익 배분이라고 해석 가능
- (끼워 팔기) 거래 상대방이 자유롭게 방송프로그램 제공자가 공급하는 서로 다른 방송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
  - ※ 명시적으로 끼워팔기를 하지 않더라도, 개별로 구매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끼워팔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해당 금지 행위 유형으로 설정
- (배타적 거래) 방송프로그램 제공의 대가로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방송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의 방송프로그램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규 거래 개시를 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 ※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와 거래를 할 경우, 해당 공급자에게 불이익(프로그램 대가 인상 등)을 부과하는 행위도 포함

# 제 4 장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규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 1. 개요

- OTT 시장 확대에 따라서 (1) OTT 플랫폼과 OTT 콘텐츠 공급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 이슈, (2) OTT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이용자 이익 침해 이슈 제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 방송법 및 IPTV법 관련 금지행위 조항 중에서 필수설비 제공, 홈쇼핑 관련, 방송프로그램 출연 관련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OTT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함
- 뿐만 아니라, OTT 사업자와 기존 방송사업자 사이의 갈등 가능성 역시 크게 높아질 가능성 존재
  - ※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가 OTT 서비스 시청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 존재 ☞ IPTV 사업자가 OTT 서비스의 전송 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출 가능성 등
- 하지만, 현재 OTT 서비스는 방송법 및 IPTV법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 역무와 관련된 규제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 OTT 서비스 중 실질적으로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일부 서비스의 경우, 방송법 체계로의 포섭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해서 OTT 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서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 필요
  - ※ 다만, OTT 서비스가 방송법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OTT 관련 금지행위 제도 개선 여부와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2. OTT 관련 금지행위 제도화의 목적

- (기본 방향) OTT 서비스와 관련된 금지행위 제도화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OTT 서비스 이용자 보호

-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차단
- OTT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차단
- 방송사업자에 대한 OTT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차단
- (OTT 서비스 이용자 보호) OTT 서비스 확산에 따라서 OTT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한 관련 금지 행위 제도화 검토 필요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이용자 이익 침해 차단을 위한 금지 행위가 존재하여, 현재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OTT 사업자가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임
  - 하지만, OTT 사업자가 방송법 체계에 포섭되는 등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상실할 경우 OTT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신설 필요
  - 또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가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된 행위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사업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
  - ※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은 동법 제2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이용약관을 신고 또는 승인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됨
  - OTT 서비스와 방송서비스(특히 유료방송서비스)와의 기본 기능 및 특성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부당한 시청자 차별,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및 요금 청구,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 등의 방송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OTT 서비스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우려 존재
  - 이와 같은 우려 등에 대응해 OTT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금지행위 제도화 필요성 검토 필요
-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금지행위 제도화 검토 필요
  - OTT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서 가입자 감소 등의 위협을 느낀 방송사업자 또는 자사 계열의 OTT 서비스와 경쟁하고 있는 OTT 서비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방송사업자가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예를 들어 기존 방송사업자가 OTT 서비스 시청을 방해하거나, OTT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려움
- 현행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은 이와 같은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와 같은 우려의 해소를 위한 관련 금지행위 제도화 필요성 검토 필요
- (OTT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에도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금지행위 제도화 검토 필요
  - 국내 OTT 서비스 사이의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 서비스와 국내 OTT 서비스 사이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OTT 사업자 간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현행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은 이와 같은 OTT 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와 같은 우려의 해소를 위한 관련 금지행위 제도화 필요성 검토 필요
- (방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어,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금지행위 제도화 검토 필요
  - 방송사업자가 OTT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역으로 OTT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현행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은 이와 같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OTT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와 같은 우려의 해소를 위한 관련 금지행위 제도화 필요성 검토 필요

### 3. OTT 금지행위 제도화 방식: 법제화 vs 자율규제

- (이슈)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를 법령 재개정을 통해서 제도화할 것인지, OTT 사업자 자율 규제를 유도하여 제도화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방안 1) 관련법 체계에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포섭

- (개념) 현행 방송법 및 IPTV법(또는 OTT 특별법 등)에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
- (장점)
  - 관련 금지행위 준수에 대한 강제성을 담보함으로써 제도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존 방송사업자가 OTT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까지도 차단 가능
- (단점)
  - OTT 서비스가 방송법 및 IPTV법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관련 금지행위만 규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 반면, OTT 사업자에 대한 현행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는 현행 방송법 및 IPTV법 체계에서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 존재
  - ※ 또한 OTT 서비스가 방송법 및 IPTV법 체계에 포섭될 경우 OTT 사업자에 대한 관련 금지행위 적용은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방안 2) OTT 사업자 자율 규제
  - (개념)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해당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통해서 규율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OTT 관련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
    - 현재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보호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
  - (장점)
    - 현행 법령 개정 불필요
    - 관련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에 대한 권한을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 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단점)
    - 이용자 보호 관련 금지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지행위가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이슈인 상황에서 특정 행위가 금지행위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임

- ※ 예를 들어 OTT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해당 행위가 금지행위 세부 유형에 속하는지를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판단할지, 해당 판단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
- 자율 규제 미이행 시 벌칙 부과 등을 법령으로 강제할 수 없어 관련 규제 준수의 강제성 담보가 용이하지 않음
  - ※ 사업자 자율 규제 기구 등에서 관련 자율 규제 위반 사업자에게 벌칙 부과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임
- 특히, 해외 OTT 사업자가 자율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자율 규제의 실효성 상실 가능
-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까지 부과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면서 OTT 사업자의 유사한 행위는 자율 규제를 통해서 규제할 경우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의 문제 제기 가능
- 방송법 및 IPTV법을 통해서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만을 법령을 통해서 규율할 경우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이슈는 더 크게 불거질 가능성 존재
- 사업자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율 규제를 주도할 수 있는 OTT 관련 민간 단체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음
  - ※ 관련 민간단체가 설립될 경우에도 대표성 문제 등 발생 가능
- (소결) 규제 실효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는 가능하다면 법령화하여 해당 규제 준수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아직까지 미성숙 단계에 있는 OTT 서비스의 방송 관련법 체계로의 편입이 해당 서비스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규제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규제 내용 역시 관련 금지행위 위반 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사업자간 경쟁에 심각한 저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가능
  - 오히려 해당 금지행위를 통해서 OTT 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우

려를 해소하고, OTT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OT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 가능

#### 4. 현행 세부 유형별 금지행위 적용 가능성 및 필요성 검토

가.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 거부·중단·제한

- (이슈)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의 거부·중단·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방송사업자 또는 OTT 사업자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OTT 사업자 배제를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또는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를 통해서 경쟁 OTT 사업자에게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가능성 존재
    - ※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자기와 특수 관계를 갖고 있는 OTT 사업자(예, 웨이브)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OTT 사업자(예, 티빙)에게는 콘텐츠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 존재
  - 해당 채널 및 프로그램이 OTT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콘텐츠이거나, 실질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콘텐츠라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OTT 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 역시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 향후에는 핵심 콘텐츠를 보유한 OTT 사업자가 경쟁 방송사업자 배제를 목적으로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 역시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규제 시 장점)
  -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 거부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경쟁 보호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 가능
- (규제 시 문제점)

- 독점적 콘텐츠 제공 전략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OTT 사업자에 대한 관련 행위 적용이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 제기 가능
  - ※ 특정 사업자와의 독점적인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라고 해석할 경우 이와 같은 우려는 해소될 수도 있음
  - ※ 하지만 방송사업자 또는 OTT 사업자가 자기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정 사업자에게는 자기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자기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콘텐츠 제공 전략을 채택할 경우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존재
- 해당 규제 도입 시, 국내 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역외 OTT 사업자에게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도 있어, 국내 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 ※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자가 자국 OTT 서비스에 대해서만 콘텐츠를 제공하고, 역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콘텐츠 제공을 거부할 경우, 정당하지 않는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 거부라고 해석될 여지 존재
- 반면, 역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규제 실효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가능
  - 예를 들어 역외 OTT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방송사업자는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sup>6)</sup>, 해당 규제 위반 시 역외 방송사업자에게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공을 강제할 수 없음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

나.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 설비 접근 거부·중단·제한

- (이슈)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 설비 접근 거부·중단·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6) 이는 국내에서 해당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역외 OTT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 개방형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OT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 OTT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나 다른 OTT 사업자의 전송설비 등을 사용하거나, (2) 유료방송사업자의 OTT 사업자의 전송설비 등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방송사업자 또는 OTT 사업자가 타OTT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용 인터넷망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터넷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거부라기보다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임
- (소결) OTT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설비 접근 등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관련 행위의 규제 필요성 역시 낮아 보임

#### 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의 변경

- (이슈)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의 변경 행위를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OTT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PP 또는 OTT 전용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제공 받는 채널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채널편성을 임의로 변경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 예를 들어 OTT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 관계에 있는 PP가 신규로 런칭한 채널에게 이용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도 존재
  -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 변경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서 채널 편성이 변경되는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 배제 불가
  - ※ 이용자 접근성이 낮은 채널을 부여 받을 경우 시청률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된 광고 매출 역시 감소 가능
  - ※ OTT 서비스 이용자 역시 빈번한 채널 변경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낄 가능성 배제 불가
- (규제 시 장점)

-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 변경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OTT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차단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 가능
- 채널의 제공 여부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채널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편성 변경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널 편성 여부와 관련된 사업자 자율성은 여전히 보장할 수 있음
- (규제 시 문제점)
  - OTT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법상에 정의된 채널 개념에 포함되는지가 다소 모호함
  - 역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이거나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 제기 가능
  - ※ 아직까지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역외 OTT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역외 사업자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당분간은 제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향후 관련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관련 이슈 발생 가능성 배제 불가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라. 적정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 (이슈)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적정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서 기존 방송사업자(예,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PP 등의 콘텐츠사업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임
  - ※ 향후 OTT 활성화에 따라서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이용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서 핵심 콘텐츠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이로 인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사업자의 협상력 증가 가능성 존재
  - 하지만,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향후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PP 및 OTT 전용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에게 적정 수익의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 ※ 아직까지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협상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의 규모를 확보한 OTT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가진 대규모 OTT 사업자가 출현할 수도 있음

○ (규제 시 장점)

-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익 배분을 통해서 관련 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
- 적정한 규모의 수익이 OTT 관련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배급을 위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 증가에 기여 가능

○ (규제 시 문제점)

- 역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마.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 (이슈)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방송사업자가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청 및 이용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가능성 존재
- 아직까지는 OTT 서비스로 인한 코드커팅(cord-cutting) 현상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가 OTT 서비스로 가입을 전환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우려가 높아진다면 이들이 OTT 서비스 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계약 체결을 방해할 상당한 유인을 갖게 될 수도 있음
- 특히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또는 계열사 등의 특수 관계자를 통해서 제공하고

-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하여 경쟁 OTT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도 존재함
- 또한 방송사업자가 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서비스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

- OTT 사업자가 방송사업자 또는 다른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청 및 이용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려움

- 위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범용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또는 계열사 등의 특수 관계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하여 경쟁 OTT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음
- 또한 OTT 사업자가 ▲가입계약 시 또는 해지 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 ▲다른 방송사업자나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의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나 OTT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향후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OTT 서비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들과 기존 방송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 역시 커지게 될 것임

○ (규제 시 장점)

- 서비스 시청 및 제공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 보호 제고 가능

○ (규제 시 문제점)

- 역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가능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바. 부당한 시청자 차별

- (이슈)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금 또는 여타 이용 조건에 대한 부당한 시청자 차별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OTT 사업자가 장기시청자, 다량시청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시청자 또는 다른 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시청자 등 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 조건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할 가능성 배제 불가
  - 특히, OTT 사업자가 특정 상품과의 결합 상품 이용자(통신상품 및 유료방송상품과의 결합상품 이용자 등)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이용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존재
    - ※ 예를 들어 이동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동시에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 OTT 서비스를 단품으로 이용하는 시청자 대비 현저하게 낮은 이용 요금을 부과할 경우 부당한 차별 가능성 존재
    - ※ 이는 만약 결합상품을 통해서 OTT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자측의 비용 절감 규모 보다,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금액이 더 클 경우, 단품 OTT 서비스 가입자가 결합상품을 통해서 OTT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규제 시 장점)
  - 부당한 시청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이익 제고 가능
- (규제 시 문제점)
  - 역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가능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사. 이용약관 위반 행위

- (이슈)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OTT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배제 불가

※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 제5호)에서도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금지행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약관을 신고 또는 승인 받은 경우로 제한

- 향후 OTT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가입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경우 OTT 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OTT 서비스 이용자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 존재

○ (규제 시 장점)

- 이용약관 위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 가능

○ (규제 시 문제점)

-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가능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아.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 (이슈)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OTT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할 가능성 배제 불가

- 특히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위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

- (규제 시 장점)
  - OTT 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부당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 가능
- (규제 시 문제점)
  -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타켓 광고 등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 ※ 이와 같은 우려는 해당 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등을 통해서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가능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자. 기타: 홈쇼핑 PP 및 방송프로그램 출연 관련 금지행위

- (홈쇼핑 관련 금지행위) 현행 방송법상 관련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 사업자가 홈쇼핑 PP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관련 금지행위 적용 필요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 향후 OTT 전용 홈쇼핑 PP 등이 등장할 경우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납품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협상력 수준이 기존 홈쇼핑 PP 대비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 규제 필요성이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
- (방송출연 관련 금지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을 OTT 전용 콘텐츠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5. 신유형 금지행위 규제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 ※ 앞절에서 논의된 방송사업자 관련 신유형 금지행위 제도 개선 방안의 OTT 부문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

가. 부당한 자기 고객 유인 금지

- (이슈) 본 보고서의 앞절에서 신유형 금지행위로 제안한 부당한 자기 고객 유인 행

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에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OTT 서비스 제공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변경을 유인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음
- OTT 사업자가 자기 고객이 자신의 가입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저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 존재
-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OTT 서비스의 화질을 저하시키거나 제공 콘텐츠의 수량을 감소시키거나 일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고가의 자사 서비스로의 이전을 유도할 가능성 존재

○ (규제 시 장점)

- 자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 변경 유인을 금지함으로써 OTT 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차단 가능

○ (규제 시 문제점)

- 계약 변경을 위한 부당한 유인 행위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고 해당 행위의 의도성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 예를 들어 특정 OTT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방해나 품질 저하가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의 고가 서비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규제 당국이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 제기 가능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나. 적정 수익 배분 관련 보호 대상 확대 여부

- (이슈) 본 보고서의 앞절에서 신유형 금지행위로 제안한 적정 수익 배분 대상에 비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에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OTT 서비스 제공자가 수요하는 상당수의 콘텐츠는 비방송사업자에 의해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OTT 사업자가 이들 비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 배제 불가
    - ※ 예를 들어 OTT 서비스에게 인기 VOD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예, 지상파 및 최상위 PP 등)는 OTT 사업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할 가능성 존재
  - 특히 역외 OTT 사업자가 구매하는 국내 콘텐츠의 상당량이 외주제작사 및 영화판권 보유자 등의 비방송사업자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콘텐츠사업자 피해 발생 가능성 존재
    - ※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역외 OTT 사업자의 국내 콘텐츠 구매 규모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역외 OTT 사업자의 국내 콘텐츠 구매 규모가 커질수록 외주제작사 등 국내 콘텐츠 사업의 국내 방송사업자 및 OTT 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가능
    - ※ 하지만 이들의 역외 OTT 사업자의 지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들 역시 국내 콘텐츠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협상력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 불가
  - (규제 시 장점)
    - 비방송사업자 제공 콘텐츠에 대한 적정 가치 보장을 통해서 관련 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 가능
  - (규제 시 문제점)
    - 역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 제기 가능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다. 적정 수익 배분에 필요한 자료 제공 관련
- (이슈) 본 보고서의 앞절에서 신유형 금지행위로 제한한 적정 수익 배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에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OTT 서비스 제공자가 수요하는 콘텐츠 규모가 향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OTT 제공 채널의 시청률 정보 및 OTT 제공 VOD 콘텐츠 이용 정보 등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한 자료 공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상당히 보임
- ※ 현재는 OTT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채널은 실시간 방송채널이 동시에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방송채널의 시청률을 활용해서 채널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향후 OTT 서비스 전용 실시간 채널 등장 시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채널의 시청률 정보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sup>7)</sup>
- (규제 시 장점)
  - 콘텐츠 가치 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해서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콘텐츠 적정 가치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관련 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 가능
- (규제 시 문제점)
  - <적정한 수익 배분을 위한 계약 조건의 결정 또는 수익 산정 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기가 어려워 해당 자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 발생 가능
  - ※ 하지만 수익 배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수익 배분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를 사전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사전에 이와 같은 자료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 향후 관련 시장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점 존재
  -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 제기 가능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7) OTT 서비스 제공자는 개별 시청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의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방송채널 시청률 정보 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

라. 콘텐츠 제공자의 불공정 행위 관련

- (이슈) 본 보고서의 앞절에서 신유형 금지행위로 제정한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에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규제 필요성)
  -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거래 조건 등을 강요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려움
    - ※ OTT 사업자간 경쟁뿐만 아니라 OTT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서 OTT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상대적 협상력 역시 증가할 가능성 존재
    -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기 콘텐츠를 다량으로 보유한 방송사업자일수록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하게 되고, 중소 규모 OTT 사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 존재
- (규제 시 장점)
  - 콘텐츠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OTT 서비스 이용자의 불필요한 부담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여,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기여 가능
- (규제 시 문제점)
  - 현행 관련법 체계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OTT 사업자에게 대해서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야 하나, 앞서 논의에서 해당 행위를 OTT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설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서, 해당 조항 이외의 별도의 근거 조항 마련 필요
  - 비방송사업자가 불공정한 조건으로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비방송사업자의 방송법 규제 체계로의 편입이 요구되나, 이는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방송사업자 또는 OTT 사업자가 비방송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 행위의 차단은 관련 법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정 정도 가능해 보이나, 비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 또는 OTT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 행위의 차단은 현행 관련법 체계를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 이는 현행 관련법 제정의 취지가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나 연관된 사업자(예, 외주제작사) 또는 이용자에게 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임. 다시 말해서 현행 관련법 체계에서 비방송사업자나 이용자는 보호의 대상이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 해당 규제 적용 대상에 비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제외될 경우 해당 제도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이슈도 제기 가능

- 역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과 규제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

○ (소결)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 콘텐츠 제공 여부에는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콘텐츠 제공 조건의 공정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6. OTT 서비스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 방안(안)<sup>8)</sup>

○ (방송법 개정 방안)

〈표 4-1〉 OTT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 적용 세부 방안 검토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

8) '19년 7월 김성수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OTT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채택되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OTT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 적용 세부 방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현행	개정안
<p>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5. 3. 13., 2015. 12.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li> <li>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li> <li>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li> <li>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li> </ol>	<p>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와 <u>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u>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5. 3. 13., 2015. 12.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방송사업자 등과 <u>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u></li> <li>2. (방안 1) 다른 방송사업자등과 외주제작사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방안 2) 다른 방송사업자등, 외주제작사, 그밖에 자신에게 방송내용물 또는 자신이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에 수반되는 서비스나 <u>온라인동영상제공 서비스에 콘텐츠를 공급한 여타 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u></li> <li>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과 <u>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u>하거나, 자신의 방송서비스 또는 <u>자신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변경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u></li> <li>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u>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나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u></li> </ol>

현행	개정안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5. <b>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b>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나 <b>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b>

○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표 4-2〉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안

현행	개정안
<p>I.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4.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채널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 편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p>	<p>I.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4. 다른 방송사업자등이나 <b>온라인동영상콘텐츠제공사업자의 채널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 편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b></p>
<p>III. 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1.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 시청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p>	<p>III. 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1.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b>방송서비스나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b></p> <p>가.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나 <b>다른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시청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b></p> <p>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p>

현행	개정안
<p>는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p> <p>2.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나.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IV.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1. 장기시청자, 다량시청자, 다른 사업자로 부터 가입을 전환한 시청자 또는 다른 사</p>	<p>는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p> <p>2. 다른 방송사업자등이나 <b>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b>하는 행위</p> <p>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b>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이나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b>하는 행위</p> <p>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이나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b>다른 방송사업자등이나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b>하는 행위</p> <p>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이나 <b>다른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b>하는 행위</p> <p>라. 자신의 방송서비스 또는 <b>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저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약 변경을 유인</b>하는 행위</p> <p>마.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b>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이나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 사이의 서비스 계약 유지를 방해</b>하는 행위</p> <p>IV.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1. 장기시청자, 다량시청자, 다른 사업자로 부터 가입을 전환한 시청자 또는 다른 사</p>

현행	개정안
<p>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시청자 등 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는 행위</p> <p>2. 방송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는 행위</p> <p>3. 방송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른 방송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등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면서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요금이나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시청자 차별을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시청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p> <p>V.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1.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2. 이용계약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p> <p>VI. 법 제85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1.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p>	<p>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시청자 등 <u>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 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는 행위</u></p> <p>2. 방송서비스 또는 <u>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u>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는 행위</p> <p>3. 방송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른 방송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등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면서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요금이나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시청자 차별을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시청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p> <p>V.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1.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 또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u>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 또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u></p> <p>2. 이용계약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p> <p>VI. 법 제85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1. 방송서비스 또는 <u>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u>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p>

현행	개정안
<p>2.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p>	<p>행위</p> <p>2. 방송서비스 또는 <u>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u></p>

## 제5장 주요 연구 결과 요약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
  -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채널 사업자간 시청률 경쟁 및 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반면, 전체 방송시장의 성장 속도는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방송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음
- OTT 서비스 관련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우려 존재
  -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하지만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들과 연관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향후 (1) OTT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사업자 사이의 수익 배분 관련 이슈, (2) OTT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사업자 사이의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 관련 이슈, (3) OTT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관련 이슈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함
- 본 보고서를 통해서 다음의 연구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방송시장 및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목표 1) 방송시장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세부 유형을 분석
  - (연구목표 2) OT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과 연관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세부 유형을 분석

- (연구목표 3) 새로운 유형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응한 금지행위 개선 방안 마련

## 2.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

-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 양태 변화와 OTT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기존의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음
- (유형 1) 부당한 방식의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 방송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특히,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상품을 판매하거나, 타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1) 기존 상품의 서비스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2) 그 밖의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시청자의 방송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유형 2)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
  - 방송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와의 서비스 계약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 존재
  -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성장세가 둔화되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근접함에 따라서 타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자신의 가입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이와 같은 타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자기 가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타방송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의 계약 유지를 방해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 (유형 3) 외주제작사 등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수익 배분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관련 조항에 따르면 적정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피규제 대상 방송사업자의 상대방 역시 다른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방송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방송사업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로만 한정되지 않음
- 이 같은 상황에서 비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및 VOD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한 수익 배분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현행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제도를 통해서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유형 4) 수익배분방식 또는 배분 규모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거부 및 허위 자료 제공
  -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수익배분 방식을 결정하거나 배분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적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 존재
  - 예를 들어,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revenue sharing 방식으로 VOD 매출액을 배분할 경우, 배분되는 매출액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지만, 해당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존재
- (유형 5) IPTV 방송 제공사업자와 IPTV 방송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의 구매 및 제공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 IPTV 방송 제공사업자가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콘텐츠의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sup>9)</sup>가 IPTV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할 가능성 존재
  - 예를 들어, IPTV 방송 제공사업자나 IPTV 방송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실시간 채널의 제공과 관련된 협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실시간 채널을 구매하거나 제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

9) IPTV법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제3항에 따라 IPTV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유형 6) PP 등 콘텐츠 제공 방송사업자측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등)
  - 관련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일부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유료방송플랫폼측에 대한 상당한 협상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불공정 행위를 할 우려 역시 존재
  - 일부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이용해서 (1)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등 콘텐츠 도매 수요자에게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거나, (2) 인기 콘텐츠의 구매를 위해서 비인기 콘텐츠의 구매를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3) 자신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다른 콘텐츠사업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행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유형 7) OTT 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sup>10)</sup>
  -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규율 대상 사업자는 기존 방송사업자로 한정됨에 따라서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OTT 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OTT 플랫폼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SO나 IPTV 등의 유료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관련된 문제점 역시 그대로 발생할 수 있음

### 3. 방송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 가. 부당한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금지

- 방송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공정 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함

---

10) (1) OTT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2) 방송사업자의 OTT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3) OTT 사업자 간의 불공정 행위, (4) OTT 사업자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 현행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에서도 '과다한 이익 제공'이나 '허위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 고객의 부당 유인을 금지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자신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관련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포섭하고 있지 못함
- 방송사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의 서비스 전환을 유인하는 행위를 방송법 및 IPTV법상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이나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서비스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식으로 자사 고객 변경(예, 고가 서비스로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

#### 나.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 계약 유지의 부당한 방해 금지

-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더욱 격화될수록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시청자 사이의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를 방해할 유인은 더욱 커질 가능성 존재
- 하지만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관련 조항에 따르면 현재 체결되어 있는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사이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유지를 부당한 방식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이 용이하지 않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에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를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추가

#### 다.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 개선

-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외주제작사 등 비방송사업자와 방송사 및 유료방송 플랫폼 등 방송사업자 사이에 콘텐츠 수급과 관련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 증가
- 방송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1) 외주제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2) 제작비 절감을 위한 외주제작 단가 인하 압력 역시 더욱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 및 IPTV법의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유료방송사업자나 PP 등 자신의 방송사업 수익을 다른 사업자에게 콘텐츠 사용 대가 등의 명목으로 배분하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외주제작사 등의 비방송사업자에게도 적정한 수익의 배분을 거부·지연·제

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설정

라.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 관련 금지행위 개선

- 적정한 수익 배분 계약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적정 수익 배분 규모의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는지의 여부임
- 적정 수익 배분 규모 결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허위로 제공되거나, 그 제공이 거부될 경우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크게 저하될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익배분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

마. 정당한 사유 없는 IP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구매 및 콘텐츠 제공 거절·중단·제한 행위 금지

- 방송법과 달리 IPTV법에는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행위 세부 유형에 포섭하고 있지 않고 있어, 비대칭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 존재
- IPTV 가입자 규모가 SO 가입자 규모를 초과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의 중심이 IPTV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IPTV 방송 제공사업자와 IPTV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포섭해야할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IPTV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IPTV 방송 제공사업자와 IPTV 콘텐츠사업자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구매 및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을 설정

바. 콘텐츠 제공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금지

- 현행 방송법도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

에서 해당 행위의 세부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제시하는 세부 금지행위 유형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여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조건으로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등 콘텐츠사업자가 과도한 협상력을 행사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응하는데 한계 존재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금지행위에(1) 콘텐츠 제공의 대가로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2)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다른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3) 콘텐츠 제공의 조건으로 다른 콘텐츠 제공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자는 것

#### 4.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가.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규제 개선 검토 필요성

- OTT 시장 확대에 따라서 (1) OTT 플랫폼과 OTT 콘텐츠 공급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 이슈, (2) OTT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이용자 이익 침해 이슈 제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 방송법 및 IPTV법 관련 금지행위 조항 중에서 필수설비 제공, 홈쇼핑 관련, 방송프로그램 출연 관련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OTT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함
- 뿐만 아니라, OTT 사업자와 기존 방송사업자 사이의 갈등 가능성 역시 크게 높아질 가능성 존재
- 하지만, 현재 OTT 서비스는 방송법 및 IPTV법 체계에 포섭되어 있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 역무와 관련된 규제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 OTT 서비스 중 실질적으로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일부 서비스의 경우, 방송법 체계로의 포섭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해서 OTT 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서 대

## 한 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 필요

### 나.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 거부·중단·제한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의 거부·중단·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방송사업자 또는 OTT 사업자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OTT 사업자 배제를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또는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를 통해서 경쟁 OTT 사업자에게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가능성 존재
- 하지만, 독점적 콘텐츠 제공 전략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OTT 사업자에 대한 관련 행위 적용이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 제기 가능
- 해당 규제 도입 시, 국내 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역외 OTT 사업자에게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도 있어, 국내 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가능
- 관련 규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의 거부·중단·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 설비 접근 거부·중단·제한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 설비 접근 거부·중단·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개방형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OT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 OTT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나 다른 OTT 사업자의 전송설비 등을 사용하거나, (2) 유료방송사업자의 OTT 사업자의 전송설비 등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방송사업자 또는 OTT 사업자가 다른 OTT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용 인터넷망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터넷망에 대

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거부라기보다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임

- OTT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설비 접근 등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관련 행위의 규제 필요성 역시 낮아 보임

라.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의 변경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의 변경 행위를 관련 OTT 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OTT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PP 또는 OTT 전용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제공 받는 채널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채널편성을 임의로 변경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 변경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서 채널 편성이 변경되는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 변경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OTT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차단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 가능
- OTT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법상에 정의된 채널 개념에 포함되는지가 다소 모호하며, 역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이거나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가능
- 관련 행위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의 변경 행위를 관련 OTT 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향의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마. 적정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서 기존 방송사업자(예,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PP 등의 콘텐츠사업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향후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PP 및 OTT 전용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에게 적정 수익의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 관련 규제 도입 시, 적정한 규모의 수익이 OTT 관련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배급을 위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 증가에 기여 가능
- 반면, 역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 관련 규제 도입 시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향의 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바.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방송사업자가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청 및 이용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가능성 존재
- 특히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또는 계열사 등의 특수 관계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하여 경쟁 OTT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도 존재함
- OTT 사업자가 방송사업자 또는 다른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청 및 이용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려움
-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함으로써 서비스 시청 및 제공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 보호 제고 효과 기대 가능
- 반면, 역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

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가능

- 관련 행위 발생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방송시청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사. 부당한 시청자 차별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금 또는 여타 이용 조건에 대한 부당한 시청자 차별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OTT 사업자가 장기시청자, 다량시청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시청자 또는 다른 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시청자 등 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 조건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할 가능성 배제 불가
- 특히, OTT 사업자가 특정 상품과의 결합 상품 이용자(통신상품 및 유료방송상품과의 결합상품 이용자 등)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이용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존재
- 이와 같은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시청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이익 제고 가능
- 반면, 역의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가능
-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시청자 차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 이용약관 위반 행위 금지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OTT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

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배제 불가

- 향후 OTT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가입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경우 OTT 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OTT 서비스 이용자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이용약관 위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 가능
- 반면,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가능
- OTT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우려를 고려할 때, 해당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의 관련 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자.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행위를 OTT 관련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필요
- OTT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할 가능성 배제 불가
- 특히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를 이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위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
- OTT 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부당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차단 가능
- 반면, 관련 행위 금지 시,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타겟 광고 등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가능하며,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존재할 수 있음
- 관련 행위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OTT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권오승·이원우 편(2007),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법문사.

김태오·김호정(2015),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법해석기준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각연도),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

\_\_\_\_\_,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임준 외(2008),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정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_\_\_\_\_(2009), 『금지행위 세부유형 등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경오(2012),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의 의미”,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 제71권.

홍대식·이성엽(2016), 『방송시장 금지행위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법]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시행령

강 준 석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Indiana Univ. 텔레커뮤니케이션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 용 재

- McMaster Univ. 경제학과 졸업
- McMaster Univ. 경제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9-33

방송 분야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New Type of  
Prohibition in the Broadcasting Sector)

---

2019년 12월 일 인쇄

2019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http://www.kcc.go.kr)

인쇄 인성문화

---